우수사례

· **A**(스포츠용품 관련 특허권 권리자)
· **B**(온라인 스포츠용품 판매업자)

A는 OO스포츠용품을 개발하여,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로, 자신이 개발한 OO스포츠용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B는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B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판매·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B를 특허권 침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는 B의 형사처벌보다는, 판매중지 및 손해배상이 필요했으며, B는 OO스포츠용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비해, A가 원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동 사건은 해당 검찰청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되어, 양 당사자는 침해품의 전량 폐기 및 A가 최초 제시한 손해배상액의 65%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여 70일 만에 원만하게 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산업재산권 분쟁!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조정으로 해결하세요!

신청 및 문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www.koipa.re.kr/adr
Tel 1670-9779 **Fax** 02-553-5865 **E-mail** ip.adr@korea.kr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 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의 **분쟁**은?
이제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란

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양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직무발명 · 영업비밀 · 부정경쟁행위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 **신속한 분쟁해결** (3개월 이내)
- **간편 절차 신청비용 무료**
- 절차 **비공개** (비밀 보장)
- **전문가**의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대상

신청 분야

- **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 **직무발명** 관련 분쟁
- **영업비밀** 관련 분쟁
-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신청 자격

- **산업재산권자·실시권자·사용권자**
- **직무발명자·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 **부정경쟁행위**의 **분쟁 당사자**
-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우편, 팩스 이메일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 www.kopia.re.kr/adr
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T 1670-9779 **F** 02-553-5865 **E-mail** ip.adr@korea.kr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절차 · 효력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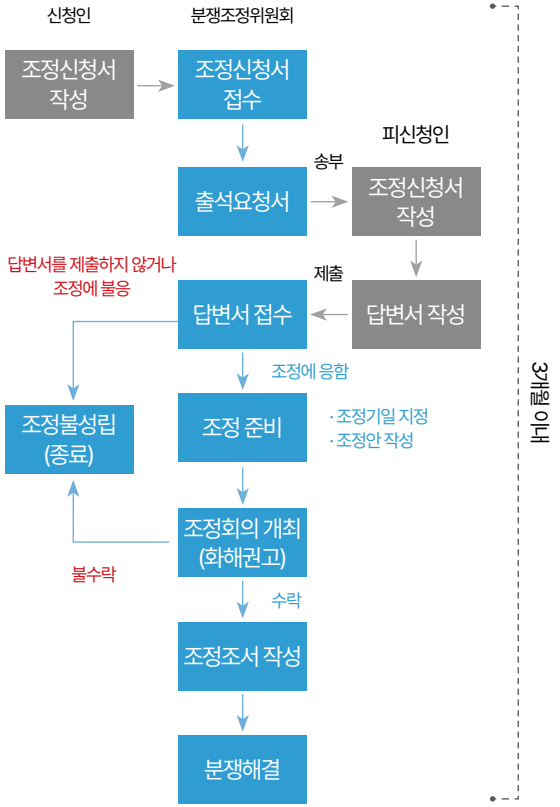

분쟁조정제도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